

분류기호 문서번호	학운2019-19호	협 조 문		
시행일자	2019년 5월 27일			
수 신	전체교원	발 신	학사운영처장	이영숙
제 목	2019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에 따른 신청 처리 절차 안내			

1. 평소 학사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16학년도 2학기 도입된 「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교수님께서서는 신청 처리 절차를 숙지하시어 조기취업대상 학생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자)

1. 산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자로서 마지막 학기 등록을 마친 자
2. 마지막(졸업) 학기를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이수조건을 충족 가능한 자
3. 조기취업자의 소속 학과 전공과 해당 산업체의 전공 분야가 일치
4. 사회복지사업법, 유아교육법, 각종 국가고시 면허(자격)증 취득에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청 절차(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자)

1. 신청 시기(마지막(졸업) 학기)

가. 학기 개시 전에 취업이 확정 되었을 경우 : 학기 개시 후 7일 이내

※ 등록금 납부 및 수강 신청 후 신청

나. 학기 중에 취업이 확정 되었을 경우 : 취업확정 후 7일 이내

2. 제출 서류

-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 산업체 재직 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택일))

- 조기취업자 서약서

3. 제출 절차

가.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확인

나.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산업체 재직 확인서], [조기취업자 서약서] 학과에 제출

4. 기타 사항

가. 원격수업(사이버강좌 등)은 조기취업 학점인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나. 야간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경우 교차수업을 통하여 야간강좌에 출석하여야 함을 원칙



3. 학점인정평가위원회 개최(학과)

1. 신청서(제출 서류) 및 신청한 학생의 전공과 조기취업된 산업체와의 전공일치 심의
2. 학과 학점인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학생 명단,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4. 학점인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접수 및 통보(산학협력단 -> 학과)

1. 산학협력단

- 학과 학점인정평가위원회로 부터 접수된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신청 심의 결과를 검토 후 해당 학과 장에게 통보

2. 학과

-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신청 검토 결과를 해당 학생 및 담당교수에게 통보



5.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자)

1. 제출 시기 :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 학기 기말고사 실시 1주일 전까지
2. 제출 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택일)
3. 제출 처 : 소속 학과



6. 과제물 제출 및 성적평가 응시(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자)

-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자는 수강신청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인 후 학기말시험(직무수행능력평가) 등 성적평가 1회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전공 관련 과제물 또한 반드시 제출
- ※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되 교내 출석일수가 수업일수 1/2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A까지, 1/2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B*까지 인정



7. 최종 성적 확정(학과, 산학협력단, 학사운영처)

1. 학과

- 가. 학과장은 학기말 종합평가 시작 전까지 조기취업 학점인정 신청자의 재직사실을 확인(산업체 재직 확인서 수령)
- 나. 학과 학점인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 1) 수령한 최종 산업체 재직 확인서, 과제물 및 성적 평가 결과 등 당해 학기 학업성적 관련 제반서류 심의
 - 2) 회의 결과에 따른 조기취업 학점인정 대상자 확인서와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2. 산학협력단

- 학과 학점인정평가위원회로 부터 접수된 서류 검토 후 그 결과를 학사운영처에 통보

3. 학사운영처

-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성적을 인정한다.

3. 문의 : 학사운영처 손금로(내선 1014)

붙임 : 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1부. 끝.